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호로 2022년 9월 18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허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겸임 허용(안 제72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2조의 2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위원과 겸직을 허용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행동강령 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중복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적·시간적 소요와 예산 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